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11.9.)

조례안·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4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5
5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19
6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24
이 하 여 백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10. 18.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10. 25.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2조·별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사업소 부지, 충전장소와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등

2)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 사업소 부지, 용기 보관실 구조·면적 등

나. 경상남도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지적사항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9. 16. ~ 10. 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어 있고 경상남도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액화 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의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제2조 관련)

구분	세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 거리는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일 것 <table border="1" data-bbox="379 882 1382 1160"> <thead> <tr> <th>저장능력</th> <th>보호시설까지의 거리</th> </tr> </thead> <tbody> <tr> <td>10톤 이하</td> <td>24미터</td> </tr> <tr> <td>10톤 초과 20톤 이하</td> <td>27미터</td> </tr> <tr> <td>20톤 초과 30톤 이하</td> <td>30미터</td> </tr> <tr> <td>30톤 초과 40톤 이하</td> <td>33미터</td> </tr> <tr> <td>40톤 초과 200톤 이하</td> <td>36미터</td> </tr> <tr> <td>200톤 초과</td> <td>39미터</td> </tr> </tbody> </table> <p>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저장능력별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p>	저장능력	보호시설까지의 거리	10톤 이하	24미터	10톤 초과 20톤 이하	27미터	20톤 초과 30톤 이하	30미터	30톤 초과 40톤 이하	33미터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미터	200톤 초과	39미터
저장능력	보호시설까지의 거리														
10톤 이하	24미터														
10톤 초과 20톤 이하	27미터														
20톤 초과 30톤 이하	30미터														
30톤 초과 40톤 이하	33미터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미터														
200톤 초과	39미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같은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18.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10. 25.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 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한 사업 외에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플러스 또는 농촌협약 사업까지 확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조건인 위원회를 추가하는 등 거창군 농촌지역개발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안 제명, 제2조제3호)

1)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사업 신설

나. 마을만들기 관련 비상설위원회 추가(안 제10조)

1) 현행) 맞춤형 마을만들기 위원회

2) 신설)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다. 비상설위원회에 따라 위원회 정비(안 제11조·제14조)

1) 위원회 임기 삭제

2) 정기회·임시회 구분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 제22조 ·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9. 23. ~ 10. 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맞춤형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농촌협약 사업까지 확대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 정비하는 내용으로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불 임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업”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마을만들기”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주민이 제안한 맞춤형 마을만들기

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맞춤형 마을만들기,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위원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 사업담당에서 구성하고,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1.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위원회

2. 거창군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3. 거창군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

항·제4항(기존 제5항) 중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4항(기존 제5항) 중 “담당과장이”를 “담당주사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 중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각각 한다.

제14조제3항 중 “위원회의 간사”를 “군수”로 “비치하여야”를 “갖춰줘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맞춤형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에 의하여 그들의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제안된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p> <p>4. “추진주체”란 개인, 단체, 단체 간의 네트워크, 마을 또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u>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을 총칭한다.</u></p> <p>제10조(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p> <p>3. 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p> <p>4.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마을만들기”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p> <p>가. 주민이 제안한 맞춤형 마을만들기 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p> <p>4. “추진주체”란 개인, 단체, 단체 간의 네트워크, 마을 또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u>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을 총칭한다.</u></p> <p>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맞춤형 마을만들기,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위원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 사업담당에서 구성하고,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p> <p>1.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위원회 2. 거창군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3. 거창군 농촌협약 추진위원회</p> <p>②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1. 사업계획 수립</p>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2. 사업의 대상과 범위

3.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삭 제>

④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각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각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④ (생략)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3.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운영세칙) 그 밖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18.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10. 25.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장봉기 수도사업소장]

공공목적의 소방용수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면제하여 소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수도 사용료 면제 대상 추가(안 별표 7)

- 1) 공공목적의 소방용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38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 단축

- 가) 예고기간: 2021. 9. 27. ~ 10. 14.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목적의 소방용수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 「수도법」과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관련근거가 있고 공공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의 감면대상란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대상	감면율
<u>과. 공공목적의 소방용수</u>	<u>100퍼센트</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상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18.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10. 25.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출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근거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대 상: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 사 업 비: 30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22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 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2년	250	300	300			300	

○ 사업내용: 거창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4. 참고사항

가. 부서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 조속히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2021년 대비 5천만원을 증액 출연
- 신용보증재단 출연요청액은 5억원이나 추후 거창군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 변화, 경남 타시군 출연금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출연액 범위를 결정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다. 참고사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지원 협조 공문(붙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출연안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 조속히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1년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이 가능하며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금을 증액 출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관련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18.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10. 25.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강신여 산림과장]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거창군 출연기관으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수행을 목적으로 함
-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은 실험생산을 진행하며 특화제품개발 및 각종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실험생산 공장으로서
- 대상지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무상사용하여 왔으며 2022년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개요(건물)

○ 위치 :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2번지

○ 건물면적 : 392㎡

○ 소유자 : 거창군

○ 사업비 : 451백만원(기계설비 309, 건축물 138, 부대시설 등 4)

○ 사용·수익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토지 : 개인 토지(5,500천원/년, 소유주 : 진산 김치성)

나. 사용료 감면 내역: 5,782,622원

○ 사용료 산출 : 115,652,447원 × 50/1,000(요율) = 5,782,622원

- 건 물 : 115,640,000원(시가표준액)

- 기계설비 : 12,447원

(최초 거래가격 309,000,000원 × 13년 경과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적용)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 ‘해당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다. 추진경과

○ 2008. 1. ~ 2021. 12. 31. 무상사용

○ 2021. 10. : 재산관리관(미래전략과) 협의

라. 향후계획

○ 2021. 12.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사용허가 신청

○ 2021. 12. : 사용허가(재산보존 책임, 원상태로 반환 등)

○ 2022. 1. 1. ~ 2024. 12. 31. : 3년간 무상사용

마. 기대효과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연구에 필요한 친환경기능석재공장을 무상사용하여 거창화강석만의 차별화·고부가가치화 제품의 연구·개발에 매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31조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 제15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나.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거창군 출연기관으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은 실험 생산을 진행하여 특화제품개발 및 각종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장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며
- 거창화강석만의 차별화·고부가가치화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3. 제1호(토지) 및 제2호(주택)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

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5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허가조건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5.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사진설명 : 위천면 남산리 105-22번지



사진설명 : 위천면 남산리 105-22번지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18.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10. 25.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강신여 산림과장]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2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2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 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2년	180	280	280			280	

- 2021년 출연금 180백만원(2021년 대비 100백만원 증액)

○ 사업내용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인건비 지원 등 : 200백만원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석재압축강도 시험기 구입 : 80백만원

나. 예산증액사유

- 거창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기능을 맡고 있는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연구업무 직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지원
- 2008년 최초 구매 이후 내구연한(10년) 경과 및 사용빈도 증가로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구입하여 지원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출연안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 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운영 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거창화강석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계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